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주식회사 HJ중공업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구성]

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.

제3조 [위원장]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.
- ③ 전항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임시 위원장을 선임하고, 임시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[결의사항]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고,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그 의사록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 [준용규정]

위원회의 소집절차, 결의방법, 의사록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**제1조 [시행일]**

1.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